

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4. 7. 18
사회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4. 7. 12
- 다. 회부일자 : 94. 7. 12
- 라. 상정일자 : 94. 7. 18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사유

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 제1호 및 대구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이 설치, 관리하는 노상주차장(구재산으로 관리하는 노폭 20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)을 삼입하고,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(노외주차장, 부설주차장의 영업 위반행위)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(책임보험가입의 위반사항)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 재원조성에 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주차장법 제21조 및 제3항 제1호 및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을 대구직할시 달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제1호에 삼입

- 주차장법 제24조의 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- 삭제(안 제2조 제6호)
-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- 삭제(안 제2조 제7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성준)

- 본 조례는 제22회 정기회(93.12.24)에서 제정된 조례임.
- 본 조례 제2조(세입) 부분의 대상 항목 1호~8호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 및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 규정에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 주차장 주차요금을 특별회계 수입재원으로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“노상주차장”을 본조례 제2조제1항에 삽입시켜야 하며
- 본 조례 제2조 제6호인 법 제24조의 2(과징금 처분) 및 제30조(과태료)에 규정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과 동조 제7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한 본조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됨으로 본 조례 제2조제6항과 제7항은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.

4.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첨부 : 조례안 1부